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재로부터 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공제료 직접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55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필요

3. 주요내용

가.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명시
(안 제9조의4 개정)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공제료 지원을 위한 근거 재원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지원할 경우, 화재공제 운영주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하고, 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공제가입현황서를 제출 (안 제9조의4 개정)

1) 정부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공제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화재공제 운영주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급할 필요가 있음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제료 지원금을 받으려고 할 경우, 공제

가입현황을 정부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3)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음

다. 보조금 지원 자료 제출 등 공단의 화재공제 운영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안 제34조의2 개정)

1) 피해 발생 시 상인들에게 공제금의 지급, 공제 계약 및 공제료의 납입
업무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므로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26년 예산 마련 예정)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액을 공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액을 받으려는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공단은 필요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포함한다)”를 및 공단(법 제24조의2 및 이 영 제9조의5부터 제9조의7까지의 화재공제 운영 업무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4. 제9조의5제1호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
5. 제9조의6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제계약 및 공제료 납입
6.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

부 칙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u>보조금</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액을 공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u><신설></u>	④제1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액을 받으려는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신설></u>	⑤제1항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공단은 필요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1조 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u>자를 포 함한다</u>)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u>자를 포 함한다</u>)및 공단(법 제24조의2 및 이 영 제9조의5부터 제9조의 7까지의 화재공제 운영 업무로 <u>한정한다</u>)-----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9조의5제1호에 따른 공제 금의 지급</u> 5. <u>제9조의6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제계약 및 공제료 납 입</u> 6. <u>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연 락 처	(044) 204 - 7899